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8장 입소계약

제 128조(계약기간 및 계약목적)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인정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본 계약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129조(계약의 해제)

시설은 입소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1. '갑'의 해지

'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을'의 해지

- ①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②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③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 130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의무)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시키거나 시설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2. (신원 인수인의 권리)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31조(입소자 처우)

1. 시설의 입소자는 종교, 성별, 신체, 기타 개인적 특수사정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에 따라 적절한 기능회복 훈련과 개별상담, 생활지도서비스를 제공받는다.
2. 시설은 입소자에게 생활지도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한다.
3. 입소자가 받는 요양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입소계약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4. 의료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하에 협력병원에서 지시하는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의료 서비스가 다양하므로 협력병원에서 하달하는 구체적 처리절차를 따른다.

제 132조(입소자「갑」 권리 및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제 133조(서비스제공자「을」의 의무)

- 1.‘갑’의 건강관리 협조
- 2.‘갑’의 신변 이상 시‘병’에게 즉시 연락(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의 제공
-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 5. 기타‘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제 134조(보호자「병」의 의무)

- 1.‘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2.‘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 4.‘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을’에게 통보
-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 6.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 7. 계약의 해지등 '갑'의 신원을 인수하여야 할 경우에 대한 책임

제 135조(퇴소)

- 1.‘을’은 제12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2.‘갑’과‘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3.‘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 한다.